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696호

「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」 지정 신청 공고

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'법'이라고 한다.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전문기업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해 「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」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9일
산업통상부장관

Ⅰ. 추진 목적

□ 국내 미래자동차 분야의 역량있는 부품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·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

Ⅱ. 신청자격 및 유효기간

□ 신청 자격 (법 제13조, 법 시행령 제12조)

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

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[1] 총매출액 중 ▲미래자동차 부품[2] 매출액 비율이 50% 이상 또는 ▲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[3] 비율이 3% 이상

1) '25년 4분기 ~ '26년 3분기
2) 미래자동차 부품·기술의 범위는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」 제2조·제3조 및 별표 1·2에 따름
3)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름

②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

③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」 별표 4에 따른 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

④ 관계 법령*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,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급제한 등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닌 기업(신청시점 기준)

*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
□ 지정 규모 : 최대 40개사

* 지정 요건을 갖춘 기업 중 "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"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며, 지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정 유효기간 (법 시행령 제12조제8항) : 지정일부터 5년간 유효

Ⅲ. 지정 방법

□ 지정 절차

구 분	세부 내용	담당 기관
신청·접수 ('26.11~12월)	·「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」을 통한 온라인 신청 (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록)	신청기업
⬇		
요건 검토	· 지정 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(미래차 부품 매출액 혹은 관련 연구개발 비중)	전담기관
⬇		
평가	· 지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정성·정량평가(참고 1) (지식재산권, 연구개발 추진형태, 연구인력, 경영역량 등)	평가위원회 (전담기관 운영)
⬇		
심의·선정	· 예산 한도, 후보기업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심의 및 선정	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
⬇		
지정 및 결과 발표 ('27.1월)	· 전문기업 지정 및 결과 발표 (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, 개별 통보)	산업통상부 (전담기관 안내)
⬇		
지정서 발급 ('27.1월)	· 전문기업 지정서 발급	산업통상부

1)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은 첨부서류 참고
2)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3) 전략회의 :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(법 제6조)

□ 평가 방법

○ **(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)** 신청기업의 신청자격,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*의 적정성 등을 검토

*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영위 여부,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비중, 미래자동차 부품 연구개발비 비중, 제재처분 해당여부, 그 밖에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

○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

- **(정량평가, 60%)** 기술역량(지식재산권, 연구개발 추진체계, 연구개발인력) 및 경영역량(부채비율, 유동비율)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정성평가 실시
- **(정성평가, 40%)** 사업 추진역량, 정책지원 적합성, 산업발전 기대효과 등을 40점 만점으로 평가

* 최종점수(100점) = 정량평가 원점수(100점) × 0.6 + 정성평가 점수(40점)

○ **(최종 선정)**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기업을 확정

* 평가 기준 및 배점은 첨부서류 참조

Ⅳ. 신청 방법

□ 신청 절차

○ 「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」을 통한 온라인 신청

<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https://biz.katech.re.kr >





○ 회원가입 → 「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」 신청하기 →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록 → 최종 제출(신청)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○ 신청 마감일시까지 시스템상 '최종 신청'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하며, 임시저장 상태는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

- 신청서류를 접수마감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신청자격 미부합시 사전 선정 제외될 수 있음

※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음

○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관(평가위원 포함)에만 공개 예정이며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
□ 제출 서류 (법 시행규칙 제4조)

● 필수제출 ○ 해당 시 제출

번호	제출서류	해당	비고
1	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	●	[서식1]
2	개인정보이용동의 및 청렴서약서	●	[서식2]
3	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검토의견서	●	[서식3]
4	제재처분 미해당 서약서	●	[서식4]
5	사업자등록증	●	
6	부채 및 유동비율 증빙자료 ① 최근 3개년도 감사보고서, 회계 결산 재무제표	●	
7	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증빙자료 ① 검토인 등록증 ② 분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(4개 분기 자료 제출) 등	●	
	② 검토에 활용된 증빙자료 (요청 시 제출) - 회계 증빙자료 : 해당 계정원장, 집행 건 관련 전자세금계산서, 납품실적증명서, 수출신고필증 등 -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 관련 계약서 - 그 외 검토에 활용된 증빙자료	○	
8	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 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,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 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인정서), 자체조직도 ② 그 외 증빙자료	●	
9	미래자동차분야 연구개발인력 명세서 및 증빙자료 ① 자체조직도, R&D 인력 관련자료 ②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	●	[서식5]
10	기업소개서	●	[서식6]
11	지식재산권 증빙자료 ① 특허/실용신안 등록결정서 또는 등록증 (특허청발급)	○	
12	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 설명서	○	

*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업 신청단계(제출서류)에서 서식(1~5) 다운로드 가능

□ 신청 기간

○ 2026. 11. 19.(목) ~ 12. 21.(월)

○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

- 수도권(서울)·충청권(천안)·동남권(울산)·호남권(광주)·대경권(대구) 등 11월 중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

- 수도권 설명회는 2026. 11. 19.(목)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

※ 이외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미래차전환종합정보시스템(http://biz.katech.re.kr) 통하여 공지 예정

Ⅴ. 지원 내용

1 전용 프로그램

□ 전문기업 지정 첫해 지원프로그램(안)

○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과정에서 시험·인증, 시제품 제작, 컨설팅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*

* 전문기업당 지원규모 등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

< 지원 가능한 비용 항목(안)>

항목	내용
①설계·해석	구조 설계, 내구성(하중,수명,열,구조,유동 등) 해석 등 지원
②시험·평가·인증	시제품 양산 성능 및 신뢰성 시험, 환경시험, 안전시험 등 지원
③지식재산권 확보	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·분석 등
④시제품 제작	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(test product) 제작 및 재료 구입 비용 등
⑤제조공정 고도화	단계별 제조공정 고도화 방안 컨설팅 지원
⑥ESG 경영 컨설팅	글로벌 ESG 규제 및 평가 대응과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및 국제표준·보고체계 구축 등
⑦투자유치 전략	투자유치 IR 자료 제작, 글로벌 투자 동향 분석, 투자자 네트워킹 등

□ 2년 차부터는 1차 년도 지원성과, 전문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화 육성 프로그램 마련 검토

2 우대 프로그램

□ 전문기업이 수출 다변화·에너지 저감 사업 지원 시 등 우대 예정

○ (수출 다변화) KOTRA와 연계하여 해외진출 전략수립, 글로벌 OEM·부품사 매칭, 공장실사 대응, 현지 테스트 지원 등 전주기(E2E) 수출 지원

○ (에너지 저감) 글로벌 탄소·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전문기업의 사업장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*하고,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저감 특화기술 보급 지원**

* 핵심 생산제품 및 공정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맞춤형 개선 방안 도출

** 공정효율화, 원소재 재활용, 순환경제 기반 공정 도입,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

※ 상기 지원 내용은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Ⅵ. 문의처

□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지원실 ☎ 041-559-3364, 3308, 041-410-3829

첨부1 **전문기업 지정 평가 항목**

기 업 명	

평가항목		평가내용		배점	평가점수
정량	1. 적합성 (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평가기준표 기반) **(60점)**	기술역량	지식재산권(20점) R&D추진형태(20점) R&D보유인력(20점)	36 (원점수x0.6)	점
		경영역량	부채비율(20점) 유동비율(20점)	24 (원점수x0.6)	점
정성	2. 사업 추진역량 **(15점)**	미래자동차 부품 전문성		5	점
		미래자동차 부품 개발 보유역량		5	
		기술사업화 역량		5	
	3. 정부지원 필요성 **(10점)**	미래자동차 부품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		10	점
	4. 산업발전 기대효과 **(15점)**	제품의 시장진출, 국내외 수요처 확보 역량		10	점
		지원 이후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(고용·매출증대 등)		5	
합 계				**100**	**점**
평가결과	**종합 평가의견**				

평가위원(성명) (서명)

첨부2 정량평가 지표 세부내역

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[별표 4]

평가항목		평가기준			배점
공통	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비중	()%	미래자동차 부품 연구개발비 비중	()%	-
	제재처분 해당 여부	□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			-
		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			
		□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·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·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대상			
		□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			
기술역량 (60)	지식재산권 (20)	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 및 기술분야 특허 또는 실용신안 (전체 누적수치)			20
		□ 등록 20건 이상 (20점)	□ 등록 5건 이상~10건 미만 (10점)		
		□ 등록 10건 이상~20건 미만 (15점)	□ 등록 5건 미만 (5점)		
	R&D (20)	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추진형태			20
		□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(20점)	□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(10점)		
		□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.운영 (15점)	□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(5점)		
	R&D 인력 (20)	신청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 및 기술분야 연구개발인력 보유 현황			20
		□ 10% 이상 (20점)	□ 5% 이상~8% 미만 (10점)		
		□ 8% 이상~10% 미만 (15점)	□ 5% 미만 (5점)		
경영역량 (40)	부채비율 (20)	신청기업의 최근 3년 간 부채비율			20
		□ 100% 미만 (20점)	□ 250% 이상~400% 미만 (10점)		
		□ 100% 이상~250% 미만 (15점)	□ 400% 이상 (5점)		
	유동비율 (20)	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			20
		□ 150% 이상 (20점)	□ 75% 이상~100% 미만 (10점)		
		□ 100% 이상~150% 미만 (15점)	□ 75% 미만 (5점)		
총점					100

서식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

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90일

기업명				설립일	
대표자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법인등록번호	
소재지					
업종				주요 생산품	
자산총계	백만원			연구개발비	백만원
영업이익	백만원			당기순이익	백만원
기업 규모	[] 대기업 [] 중견기업 [] 중소기업			분야	
종업원 수	총원()명	석사·박사(명)		학사 이하(명)	
담당자	성명			소속	
	직위			전화번호	
	전자우편			회사 홈페이지	

[미래자동차 사업 매출액 명세]

(단위: 백만원)

매출 발생 기준 연도(전년도)			
연간 총매출액(A)		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총계(B)	

	미래자동차 부품			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	
일련번호	품목	표준산업분류코드	에이치에스(HS) 코드	국내 매출액	수출액
1					
2					
3					
⋮					
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총계의 비율(B/A)				%	

(뒤쪽)

[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명세]

(단위: 백만원)

연구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(전년도)	
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(C)	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비율(C/A)
	%

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조직·설비·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. 총매출액,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 및 확인	→	신청서 처리	→	처리 결과 통지
신청인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

서식2 **개인정보이용동의 및 청렴서약서**

개인·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

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「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」(이하"사업"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.

□ **수집·이용 목적**
- ▪ 전담기관의 사업 신청 접수 업무 수행
- ▪ 전담기관의 사업 지원 이력관리 업무 수행

□ **수집·이용 항목**
- ▪ 기업명, 사업자등록번호, 기업경영규모, 성명(대표자, 책임자, 실무자)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

□ **효력기간**
- ▪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효력 발생
 - 지정이 취소되거나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 소멸
 -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
- ▪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-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□ **청렴서약**

본인(또는 수행기업)은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.

1. 본 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,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.
2.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, 알선,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3.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.

※ 본인은 본 동의서 내의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 및 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:

대 표 자 : (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서식3 **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검토의견서**

미래자동차 부품 사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검토의견서

_____ 귀하

본 _____사는 _____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미래자동차 부품 사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

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 대표자에게 있으며,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.

본 사는 미래자동차 부품 사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,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본 사의 의견은 미래자동차 부품 사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기업회계기준과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 및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증명인	등록증: 한국 공인회계사 (), 세무사 ()
	등록번호 :
	증명인 성명 :
	증명기관 :
	전화번호 :

※ 별첨 1: 등록증 사본 1부
별첨 2: 검토에 활용된 세부 산출내역

년 월 일

증명인 (서명 또는 인)

증명기관 직인

서식4 **제재처분 미해당 서약서**

제재처분 미해당 서약서

○ 기 업 명 :

○ 대 표 자 :

본 업체는 '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'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, 신청 시점 현재 아래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본 확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, 허위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
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·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·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대상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

년 월 일

대표자 [대표자 성명] (법인인감 날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서식5 미래자동차분야 연구개발인력 명세서

번호	성명	직위	부서명	담당업무	근속년수	연구전담 구분	학력사항		미래자동차기술과의 연관성
							최종학력	전공(학위)	

※ 담당업무 : 미래차기술과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'구체적'으로 기술
연구전담구분 : 연구전담, 연구보조, 기타 중 택일
전공(학위) : 미래차기술과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전공으로 작성 요망
미래자동차기술과의 연관성 : 본인의 이력(경력)과 미래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의 연관성에 대해 '구체적'으로 기술

서식6 기업소개서

※ 기업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감안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
※ 대외비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

○ 기업 소개

미래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, 기업 성장성, 발전가능성 등

○ 미래자동차 사업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

○ 미래자동차 사업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현황

미래자동차산업 연관성, 미래자동차 사업에 대한 시장성, 지속가능성, 안정성, 기술성, 경쟁사 대비 차별성 등 신청 기업의 미래자동차 사업 전문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

(제품의 경쟁사 대비 우수성, 다양한 판로처를 통한 안정성 등)

○ 미래자동차 사업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의 필요이유